

의안번호	2215619
의 퇴 인	이수진 의원
회 답 일	2026. 1. 15.
추계번호	25C7227

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 고
1	안 제3조의4 (사회복지사 등의 대체인력지원)	(제1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휴가·교육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역량개발 기회를 확대하며 휴식을 지원하기 위해 대체인력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(제2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체인력을 지원할 경우 적정 규모의 대체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	의무규정
2	안 제3조의5 (대체인력지원 센터)	(제1항) 보건복지부 및 시·도에 각각 대체인력 지원세터를 둬 (제4항) 대체인력 신청 및 지원에 드는 비용은 시·도 대체인력지원센터가 부담하며,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지원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음 (제5항)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·도 지사는 중앙대체인력지원센터 및 시·도대체인력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·도지사는 그 위탁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	(제1항) 의무규정 (제4항· 제5항) 재량규정
3	안 제3조의6 (대체인력지원 관리시스템)	(제1항)보건복지부장관은 대체인력지원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음 (제3항) 보건복지부장관은 대체인력지원관리시스템 업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고,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조의4 (사회복지사 등의 대체 인력지원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3조의5 (대체인력지원센터)	미대상: 현재 전국 총 18개소의 대체인력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므로, 개정안 시행 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3	안 제3조의6 (대체인력지원관리 시스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현재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체인력지원 사업을 통해 대체인력의 인건비, 관련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
 - 2026년도 예산에 71억 2,000만원 편성
- 개정안에 따라 사회복지사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하고, 이에 상응하는 대체인력지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확대될 지원 규모와 관련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 - 안 제3조의4제3항은 적정 대체인력의 규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,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 시행에 따라 확대될 지원자 수 등을 알기 어려움
 - － 참고로, 보건복지부는 2024년의 대체인력 신청일수(237명 추가 지원분에 해당)를 모두 지원할 경우 예상되는 인건비 추가재정소요를 67억 2,000만원으로 추산함
-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nabo.go.kr